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생에너지 PPA 기업에 대한 송배전요금 감면 및 기금 지원 근거 신설〉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78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 참고자료 ····· 13

[참고1]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단가표 ····· 13

[참고2] 전력기금 주요 지출항목별 구성 및 '직접 지원' 유형 사업 사례 ···· 14

[참고3] 전기요금 감면 또는 지원 성격 사례 ····· 16

[참고4] 기업의 RE100 참여 현황 및 전환 목표 비율 ····· 18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2.
3. 회부연월일 : 2025. 6. 13.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은 전력시장을 통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이 전기사용자에게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회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임.

이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으로부터 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60개월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 직접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에 대해 공급 개시일부터 최대 60개월간 송·배전설비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3항 신설), ②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제4항 신설), ③ 기금의 사용 범위에 '이용요금 감면 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④ 새로 신설되는 제3항·제4항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산정 규정의 참조 조문을 '제15조'에서 '제15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임(안 제51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일부터 60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감

현 행	개 정 안
	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 비용 지원 사업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제51조(부담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1조(부담금) ① ----------제15조제1항----------.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제16조의5제1항[1]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특정한 발전사업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전력구매계약' 또는 'PPA(Power Purchase Agreement)'라고 불림.

PPA 제도 개요

ㅇ 직접 PPA -**(개요)**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직접 PPA 고시(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설비용량 1MW 초과*(합산 가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계약전력 300kW 이상 일반용(을)·산업용(을) 고압 전기사용자 또는 300kVA 이상 수전설비 보유자 *단, 비계통연계형(On-site)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MW 이하도 가능 -**(정산방식)** 시간대별 정산 및 발전량 균등 정산(월간) -**(전력연계)** 계통연계형(Off-site) 또는 비계통연계형(On-site)* 방식 *(**비계통연계형**) 한전의 송·배전망 이용 없이 PPA 계약한 발전설비↔전기사용자 간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전력거래대금)** 전기사용자는 전력량대금, 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거래수수료를 부담 *비계통연계형(On-site) PPA 계약의 전기사용자는 망이용요금 및 부가정산금 부담 제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도입 경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1.1월)	▶	전기사업법 ('21.4월) 및 시행령('21.10월) 개정	▶	제3자간 PPA 고시 제정 ('22.6월)	▶	직접 PPA 고시 제정 ('22.9월)
제3자간 PPA 개념 도입		직접 PPA 개념 도입		제3자간 PPA 거래 시행		직접 PPA 거래 시행

이 제도는 일반적인 전력 거래처럼 한국전력공사나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2] 특히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음.

최근 5개년 재생에너지 PPA 관련 현황

거래년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6월)
계약 건수(개, 누적)	-	1	13	29	54
설비용량(MW, 누적)	-	2	32	442	627
거래량(MWh)	-	1,172	17,317	228,798	445,949

주1) 직접 PPA 제도는 '22년 9월 고시 제정 이후 운영 중
주2) '21～'24년은 12월 말 기준, '25년은 실적 집계 완료된 6월 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내 재생에너지 거래 비중 추이

구분	'24년		'25년(1~6월)	
	거래량 (MWh)	비중(%)	거래량 (MWh)	비중(%)
전력시장 거래	550,284,941		263,641,158	
직접 PPA 거래	228,798	0.04	445,949	0.17

주1) '25년은 실적 집계 완료된 6월 말 기준
주2) 전력시장 거래는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원의 거래량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계약 조건은 공급자와 수요자 간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량 현황

이행수단	재생E 사용량(GWh)**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녹색프리미엄	1,440	5,384	8,156	11,594	26,547
REC 구매	5	936	1,941	1,301	4,183
PPA*	-	3	19	247	269
자체건설	5	12	44	119	180
합계	**1,451**	**6,335**	**10,161**	**13,260**	**31,209**

주1) PPA는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에 따른 재생에너지 직접PPA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제3자간 PPA를 포함하고 있음
주2)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기준으로 작성하여, 전력거래량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전기사용자 유형별 PPA 참여 현황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소계
직접 PPA	33	1	4	1	39

주) '25년 6월 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PPA 참여 기업 업종별 분포

기업 구분	제조업	은행	기타	소계
직접 PPA	34	3	2	39

주) 재생에너지 PPA 참여 중인 기업 대부분은 제조업에 해당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법 제15조제1항[3]에 따르면,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송전망이나 배전망의 이용요금과 이용조건을

3) 「전기사업법」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해야 하므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PPA)를 체결했더라도 전기를 실제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송전 및 배전 설비를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이용요금도 현행 법령에 따라 그대로 부과됨. [참고1]

재생에너지 PPA 이용자의 연간 송·배전설비 이용요금 총액

구분	재생e공급량(kWh)	연간 송배전이용요금 총액(원)
'23년	4,646,294	29,408,898
'24년	206,483,463	897,880,25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결과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입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구입비용과 송배전망요금 모두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데, 재생에너지 전기의 부담 경감을 위해 송배전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한편,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법 제48조[4]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발전 기반 확충,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전력산업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재원임.

4)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수입은 전기사용자들로부터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통해 조성되며, 제49조[5]에 그 사용 목적이 열거되어 있음.

연도별 수입 내역 중 전기사용자 부담금 징수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9 이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액
부담금 징수액	274,854	19,718	21,479	23,766	30,083	30,757	400,6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양한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송전 및 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6]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에 개정안은 관련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5)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6) '직접 지원' 유형 사업 사례는 [참고2] 참조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두고자 하는 것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려는 기업들에게 요금 감면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전환이 촉진될 수 있고,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캠페인)[7]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연도별 제16조의5에 따른 전기사용자 및 재생에너지공급량 현황

(단위: 개, GWh, 억원, VAT 별도)

구 분 주1), 주2)	'22	'23	'24	'25(6월)
전기사용자 수(개)	-	27	40	41
전년 대비 증가율(%)		-	48.1%	2.5%
재생e공급량(GWh,)	-	4.7	206.5	430.2
전년 대비 증가율(%)	-	-	4,344%	180.3%
송배전망이용요금(억원)	-	0.29	9.0	17.1
전년 대비 증가율(%)		-	2,954.1%	90.9%

주1)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실적임(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는 '23. 6월 최초 거래 시행)
*동일 법인이더라도 한전 고객번호가 다른 경우(사용장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별개의 전기사용자로 산정(ex. kT&G에서 전국 19개 사업소 대하여 직접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사용자는 19개로 산정)
주2)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제2항에 따른 송전 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거래 실적은 없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7) 기업의 RE100 참여 현황 및 전환 목표 비율은 [참고4] 참조

다만,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지 않는 일반 전기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전력망은 모든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프라로서 특정 기업만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경우 그 부담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공급 개시일로부터 최대 60개월동안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 계약의 구조에 따라 단기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동일 전기사용자가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감면 대상의 자격 요건, 계약 기간의 제한, 감면 적용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배전망 이용요금은 ‘감면’보다는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감면을 전제로 요금을 산정할 경우 정부 보전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하면 전기사업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해 전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은 재생에너지 PPA로 한정하고, 단기계약을 반복하여 감면 혜택을 누리는 등의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하위 규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산업부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산업부 수정의견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의5**에 따라 계약한 전기사용자에게 **전기공급 시작일부터 60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을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신 설>	제49조(기금의 사용) ----------. 6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이용요금의 **감면 비용** 지원 사업	제49조(기금의 사용) ----------. 6의2. 제15조제3항에 따른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지원 사업**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한 사례가 없고, 이러한 방식은 가격 신호를 왜곡하고 유사 요구의 확산 및 재정부담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보조 종료 후 지속가능성이 낮으므로 감면 방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국전력공사는 RE100 이행 등 취지에는 공감하나 비용 보전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소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한다'는 형태로 규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그 밖에 **해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PPA 관련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미국)** 연방 차원의 통일된 제도는 없고 주별 전력시장 구조에 따라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며, 대형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PPA 활용 ㅇ **(독일)** 전력시장 변동성 증가와 정부 보조금 축소를 배경으로 보조금 기반에서 시장 기반 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면서 민간 주도의 PPA 계약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 ㅇ **(일본)** '21년 첫 PPA가 체결된 이후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태양광 발전단가의 하락과 일반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전력 구매 비용 절감 및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PPA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20년부터 재생e PPA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 ※출처 :「RE100 이행 수단으로서 PPA의 중요성과 개선과제」, 에경연, '23.07.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461

[참고1]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단가표

*근거규정: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1】

송전이용요금표

1.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

발 전 지 역		사용요금 [원/kWh]	기본요금 [원/kW/월]
수도권 북부지역	서울특별시 일부(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일부(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양평군, 양주시, 가평군, 연천군)	1.25	667.36
수도권 남부지역	서울특별시 일부(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양천구),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과천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평택시, 광명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군, 화성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1.20	
비수도권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1.92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90	

2. 수요지역별 송전이용요금단가

수 요 지 역		사용요금 [원/kWh]	기본요금 [원/kW/월]
수도권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44	667.61
비수도권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1.42	
제주지역	제주특별자치도	6.95	

○【별표 2】

배전이용요금표

요금 구분 / 이용전압별	기본요금	사용요금
저 압(600V 이하)	1,066원/kW	11.33원/kWh
고압 이상(600V 초과)	548원/kW	3.05원/kWh

[참고2] 전력기금 주요 지출항목별 구성 및 '직접 지원' 유형 사업 사례

□ 주요 지출항목별 구성('25년 계획 기준)

(단위 : 억원, %)

항 목	'25년 계획	
	사업비	비율
ㅇ 사업비	**20,006**	**56.3**
- 전기안전관리(기금)	1,333	3.8
- 전력수요관리	1,060	3.0
- 전선로지중화지원	231	0.7
- 재생에너지지원	5,717	16.1
- 에너지신산업	250	0.7
- 석탄수급안정및지역지원	164	0.5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86	5.6
- 농어촌전기공급지원	1,150	3.2
- 전력공급기술	4,671	13.2
- 전력수요기술	62	0.2
- 기술정책(기금)	40	0.1
- 기반구축(기금)	549	1.5
- 국제협력(기금)	862	2.4
- 전력산업정책개발및홍보	79	0.2
- 전력해외진출지원	183	0.5
- 전력산업기반조성	1,669	4.7
ㅇ 기금운영비	**77**	**0.2**
ㅇ 정부내부지출	**15,426**	**43.4**
- 에특회계전출	12,426	35.0
- 공자기금예탁	1,000	2.8
- 기후대응기금전출	2,000	5.6
합 계	**35,509**	**100.0**

□ ‘직접 지원’ 유형 사업 사례

사업명	사업내용	수혜대상
전력효율향상 (취약계층에너지복지)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비용 지원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배려 계층
전력효율향상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냉장고문달기 교체 지원	소상공인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아파트 변압기의 노후 및 용량부족으로 인한 정전발생 우려, 안전사고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후변압기 교체비용 지원	설치 후 15년 경과 노후변압기 보유 아파트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e 설비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건물지원)	상업용 등 일반 건물에 신재생e 설비설치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융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 융자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생산, 설치자
국산 무연탄 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국내 발전사에 국산 무연탄 의무사용 물량을 배정하고, 국산 무연탄 사용으로 인한 손실(국산-수입 무연탄 가격차이)을 지원	국내 무연탄 의무 소비 발전사업자 (동해화력)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기본지원, 특별지원)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주민복지지원, 기업유치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자체 주민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운전자금 등 저금리 융자 지원	원전 중소·중견기업

[참고3] 전기요금 감면 또는 지원 성격 사례

□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기본지원사업 內 전기요금 보조사업

○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첨부(다음 페이지)

□ 한편, 전력기금과는 별도로 녹색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조성된 RE100 전용 펀드를 통해 재생e PPA 망요금을 지원 중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요금과는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 금원으로, 녹색프리미엄 납부액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로 RE100 인증에 활용

* 해당 수입액은 전액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이체 → 재생e 투자에 활용

참 고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ㅇ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ㅇ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ㅇ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ㅇ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ㅇ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ㅇ「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ㅇ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참고4] 기업의 RE100 참여 현황 및 전환 목표 비율

□ 25.7월말 기준, RE100 가입기업의 이행목표 선언 현황

순번	기업명	RE100 가입시기	RE100 이행목표
1	삼성전자	‘22.9	‘50년 100%
2	SK하이닉스	‘20.12	‘50년 100%
3	삼성디스플레이	‘22.10	‘50년 100%
4	고려아연	‘21.9	‘50년 100%
5	현대차	‘22.4	‘45년 100%
6	KT	‘22.6	‘50년 100%
7	한국수자원공사	‘21.4	‘50년 100%
8	SK텔레콤	‘20.12	‘50년 100%
9	롯데케미칼	‘23.7	‘50년 100%
10	삼성SDI	‘22.10	‘50년 100%
11	기아	‘22.4	‘40년 100%
12	SK실트론	‘20.12	‘40년 100%
13	LG에너지솔루션	‘21.4	‘30년 100%
14	삼성전기	‘22.11	‘50년 100%
15	LG이노텍	‘22.7	‘30년 100%
16	LG전자	‘23.6	‘50년 100%
17	SK스페셜티	‘20.12	‘50년 100%
18	인천국제공항	‘22.2	‘40년 100%
19	현대위아	‘22.4	‘45년 100%
20	SKC	‘20.12	‘40년 100%
21	롯데웰푸드	‘23.4	‘40년 100%
22	삼성바이오로직스	‘22.11	‘50년 100%
23	현대모비스	‘22.4	‘40년 100%
24	카카오	‘23.5	‘40년 100%
25	SK(주)	‘20.12	‘40년 100%
26	HD현대사이트솔루션	‘23.11	‘40년 100%
27	신한금융지주	‘23.5	‘40년 100%
28	네이버	‘22.8	‘40년 100%
29	롯데칠성	‘21.12	‘40년 100%
30	SK아이이테크놀로지	‘21.9	‘30년 100%
31	KB금융	‘21.9	‘40년 100%
32	미래에셋증권	‘21.9	‘25년 100%
33	아모레퍼시픽	‘21.3	‘25년 100%
34	LS일렉트릭	‘23.12	‘40년 100%
35	삼성생명	‘23.3	‘40년 100%
36	삼성화재	‘23.3	‘40년 100%